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으로
정비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과 조합 해산 시기 등에 대한
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- 현행 조례는
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전 구성·운영되는 협의체 구성원에
전문가와 공무원만 포함되고
분쟁당사자인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, 사업시행자 등은
회의 참석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-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
현장의 목소리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

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이 가능하도록

협의체 규모를 확대하여 협의체 구성원의 범위에

분쟁당사자인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, 사업시행자 등을

포함시키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